- 전체수용자수에 대한 사망비율

구분 / 년도	년 평균 수용인원	사망자 수	사망비율(%)	
'97	59,327	31	0.05	
'98	67,883	30	0.04	
'99. 8월	68,176	16	0.02	

o 사망자 진료카드는 분량이 방대할뿐만아니라 각 기관에 분산보관되어 있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필요한 자를 지정하여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사망자 현황('97. 1 ~ '99. 8월)

o '97년 사망자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사 망 원 인	사망일자	비 고
김종학	800106 -1543015	폭력행위등	간종대에 의한 질식사 (당뇨병 등)	97. 1.16	
안창오	350317 -1235325	살 인	고혈압(뇌출혈)	97. 1.16	
이경진	770719 -1148613	강도상해	청장년급사 증후군	97. 2. 3	
성열중	660413 -1452422	특가법 (절도)	기관지천식	97. 2. 5	
박시엄	541128 -1810123	폭력행위등	토사물에 의한 질식사(간질)	97. 2.15	
방부영	610812 -이하불상	특가법 (강도)	자 살	97. 2.18	
정찬수	620629 -1624110	도 로 교통법	심장마비	97. 3. 8	
김상근	560127 -1380612	특수강도등	가래에 의한 기도폐쇄	97. 3.29	
임정혁	610507 -1466322	강도살인등	자 살	97. 4. 8	
김중식	501112 -1543412	폭 력	자 살	97. 4.24	
김복수	210307 -1808914	살인등	간경변증에 의한 심폐부전증	97. 5. 6	
양운승	460614 -1042410	성폭력등	심부전증	97. 5 7	
박진우	631108 -1100910	폭력행위등	기관지천식	97. 6. 7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사 망 원 인	사망일자	비 고
이규환	691125 -1641419	폭력행위등	자 살	97. 8.11	
박기석	571223 -1017818	미성년자 강 간	자 살	97. 8.12	
윤성택	640520 -1335011	폭력행위등	심장관상 동맥경화	97. 8.20	
추연천	670430 -1037639	강간치상	자 살	97. 8.20	
조순래	571103 -1903513	특가법 (도주차)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	97. 8.27	
김성일	690810 -1711025	폭력행위등	자 살	97. 9.16	
박연수	620705 -1621814	사기	심장마비증	97. 9.17	
조성헌	271104 -1829829	변호사법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파열	97. 9.21	
백종길	441125 -1674017	교특법	급성심근경색증	97. 9.28	
김복현	790523 -1933417	유해화학등	심부전증에 의한 돌발사	97.10.24	
박준식	650803 -1396513	강간치상	심근병증에 의한 급성심장사	97.10. 9	
김용운	570720 -1030520	특가법 (절도)	자 살	97.11.12	
김종경	730618 -1490013	폭력행위등	심장판막질환에 의한 심부전증	97.11.17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사 망 원 인	사망일자	비 고
이원호	340528 -1037216	상습사기	급성담낭염에 의한 패혈증	97.11.17	
이강수	780116 -1528319	절도	가격에 의한 쇼크사(폭행치사)	97.11.20	
홍대원	500827 -1840517	향정신성	관상동맥폐쇄	97.11.22	
김문보	270424 -1068916	살인	심근경색증	97.12. 4	
이봉해	551010 -1057617	절도등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	97.12. 9	

○ '98년 사망자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사 망 원 인	사망일자	비 고
이무웅	400225 -1823910	향정신성	뇌출혈	98. 1.12	
우성보	720210 -1121651	특가법 (절도)	간질에 의한 기도폐쇄	98. 1.14	
김호남	500629 -1552019	부정수표	심근경색	98. 1.21	
박선미	651003 -2810316	살 인	자 살	98. 2.20	
심정부	410112 -1235117	상해치사	패혈증, 전해질불균형에 의한 호흡부전	98. 2.26	
박학채	400610 -1574014	절 도	폐결핵	98. 3. 8	
도태용	661107 -1768810	특가법 (절도)	급성심폐기능 부전	98. 3.13	
채석현	640224 -1677011	폭력행위등	자 살	98. 3.22	
정평길	799210 -1836217	절도 등	폭행치사	98. 4. 2	
이재영	580318 -1390519	특수절도 등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장사	98. 4.12	
김효진	490525 -1080819	특경법 (사기)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부전증	98. 4.17	
서현옥	530107 -2030811	사기 등	심부전증에 의한 심장마비	98. 4.23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사 망 원 인	사망일자	비 고
이형모	400922 -1405213	횡령 등	당뇨케토산증	98. 5. 1	
김영호	670205 -1811211	특가법 (강도강간)	대동맥 및 신장동맥 경화	98. 5. 4	
이성광	631231 -1520618	살인 등	자 살	98. 5. 5	
강영천	411215 -1452721	사기	관상동맥 경화	98. 5. 6	
박진환	661102 -1536114	사기	뇌수종으로 인한 자연사	98. 5. 9	
김만조	441209 -1624113	사기등	뇌동맥류 파열	98. 5.29	
윤세관	660127 -1457229	사기등	좌흉강내 농양에 의한 패혈증	98. 7.22	
남성진	751219 -1058432	폭력행위 등	자 살	98. 8.23	
김태호	790502 -1243111	성폭력 등	청장년급사 증후군	98. 8.28	
윤성이	581217 -1897521	폭력행위 등	호흡기곤란으로 인한 기관지 확장증	98. 9.29	
문영진	640216 -1916611	폭력행위 등	패혈증, 급성복증	98.10.24	
김동진	611106 -1001112	절 도	심장마비	98.10.25	
이은수	590825 -1452420	교특법	만성췌장염	98.11. 2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사 망 원 인	사망일자	비 고
배윤성	560518 -1396913	준강간 등	당뇨병성 고삼투압성 혼수	98.11.16	
이동준	470226 -1674513	사 기	급성심근경색증	98.11.18	
배재문	581010 -1912621	향 정	자 살	98.11.20	
성호용	280528 -1030110	상습사기	심근경색증	98.12.19	
한성수	521203 -1005916	절도등	간신증후군 등	98.12.21	

○ '99년 사망자 현황('99.1.1 - 8.3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사 망 원 인	사망일자	비 고
임호갑	580625 -1790222	폭력행위 등	당뇨병성·케톤성산성증	99. 1.14	
김경현	680702 -1471814	상해치사	간질발작급사	99. 1.24	
김인호	590625 -1100316	특수강도	심장마비	99. 1.31	
이영수	570904 -1829512	사 기	급성심근경색	99. 2. 7	
윤주진	261218 -1489712	사문서 위 조	급성심근경색	99. 2.15	
김진옥	390303 -1807631	사기등	동맥경화증 대동맥파열	99. 3.14	
김영백	510712 -1393114	성폭력범죄 처벌법	자 살	99. 4. 9	
정경구	560713 -1822012	향정신성 의약품	자 살	99. 4.25	
위영권	540816 -1330916	공무집행 방해등	질식사	99. 5. 3	
김세중	570205 -1149116	사기	뇌출혈	99. 5.10	
박경진	381106 -1068514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뇌출혈 등	99. 5.13	
한종삼	670304 -1559411	폭행치사	동맥경화, 청장년급사 증후군	99. 6. 7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사 망 원 인	사망일자	비 고
진 환	771025 -1065021	성폭력범죄 처벌법	자 살	99. 6.10	
임채국	771001 -1650511	특수강도	안전사고 (가스질식사)	99. 6.10	
신행환	580403 -1182611	특수절도 등	자 살	99. 7.27	
김병현	740324 -1553310	성폭력 등	자 살	99. 8.13	

붙임 # 교정시설내 사망자 현황('98. 1 ~ '99. 9월)

○ '98년 사망자 현황

년도	번호	소 별	성 명	연령	죄 명	사 망 원 인	비 고
'98	1	영등포(교)	이 무 웅	58	향정신성	뇌출혈	미 결
	2	부 산(구)	우 성 보	25	특가법(절도)	간질에 의한 기도폐쇄	미 결
	3	광 주(교)	김 호 남	48	부정수표	심근경색	미 결
	4	청 주(여)	박 선 미	32	살 인	자 살	징역10년
	5	안 양(교)	심 정 부	53	상해치사	패혈증, 전해질불균형에 의한 호흡부전	징역5년
	6	대 구(교)	박 학 채	57	절 도	폐결핵	미 결
	7	청 송(교)	도 태 용	32	특가법(절도)	급성심폐기능 부전	징역2년 (보호감호)
	8	대 구(교)	채 석 현	34	폭력행위 등	자 살	미 결
	9	마 산(교)	정 평 길	28	절도 등	폭행치사	징역1년6월
	10	안 양(교)	이 재 영	40	특수절도 등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장사	징역2년6월
	11	청 주(교)	김 효 진	49	특경법(사기)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부전증	징역8년
	12	청 주(여)	서 현 옥	45	사기 등	심부전증에 의한 심장마비	징역8월
	13	순 천(교)	이 형 모	57	횡령 등	당뇨케톤성산성증	징역1년6월
	14	대 전(교)	김 영 호	31	특가법(강도강간)	대동맥 및 신장동맥 경화	징역10년
	15	청 송2(교)	이 성 광	35	살인 등	자 살	징역21년6월
	16	서 울(구)	강 영 천	57	사 기	관상동맥 경화	미 결
	17	광 주(교)	박 진 환	31	사 기	뇌수종으로 인한 자연사	미 결

년도	번호	소 별	성 명	연령	죄 명	사 망 원 인	비 고
	18	영등포(교)	김 만 조	54	사기 등	뇌동맥류 파열	징역 2년
	19	논 산(지)	윤 세 관	32	사기 등	좌흉강내 농양에 의한 패혈증	미 결
	20	안 양(교)	남 성 진	22	폭력행위 등	자 살	장역2년6월
	21	대 전(교)	김 태 호	19	성폭력 등	청장년급사증후군	단기5년 장기7년
	22	마 산(교)	윤 성 이	40	폭력행위 등	호흡기곤란으로 인한 기관지 확장증	미 결
	23	진 주(교)	문 영 진	35	폭력행위 등	패혈증, 급성복증	미 결
	24	서 울(구)	김 동 진	37	절 도	심장마비	미 결
	25	대 전(교)	이 은 수	39	교 특 법	만성췌장염	미 결
	26	청 송2(교)	배 윤 성	42	준강간 등	당뇨병성 고삼투압성 혼수	징역8년
	27	부 산(구)	이 동 준	51	사 기	급성심근경색증	미 결
	28	전 주(교)	배 재 문	39	향 정	자 살	장역2년6월
	29	청 송1(감)	성 호 용	70	상습사기	심근경색증	징역2년 보호감호
	30	부 산(교)	한 성 수	46	절도 등	간신증후군 등	징역1년

○ '99년 사망자 현황

년도	번호	소 별	성 명	연령	죄 명	사 망 원 인	비 고
'99	1	대 구(교)	임 호 갑	40	폭력행위 등	당뇨병성 케톤성산성증	미 결
	2	군 산(교)	김 경 현	32	상해치사	간질발작급사	징역3년
	3	부 산(구)	김 인 호	39	특수강도	심장마비	미 결
	4	성 동(구)	이 영 수	41	사 기	급성심근경색	장역1년6월
	5	춘 천(교)	윤 주 진	73	사문서위조	급성심근경색	미 결
	6	대 구(교)	김 진 옥	60	사기 등	동맥경화증 대동맥파열	징역 1년
	7	인 천(구)	김 영 백	48	성폭력범죄 처벌법	자 살	미 결
	8	안 양(교)	정 경 구	42	향정신성의약품	자 살	징역3년
	9	서 울(구)	위 영 권	45	공무집행방해 등	질 식 사	미 결
	10	의정부(교)	김 세 중	42	사 기	뇌 출 혈	징역2년
	11	서 울(구)	박 경 진	60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뇌출혈 등	미 결
	12	영등포(교)	한 종 삼	33	폭행치사	동맥경화, 청장년 급사 증후군	징역3년
	13	안 양(교)	진 환	22	성폭력범죄 처벌법	자 살	미 결
	14	춘 천(교)	임 채 국	20	특수강도	안전사고(가스질식사)	장역2년6월
	15	춘 천(교)	신 행 환	41	특수절도 등	자 살	장역1년8월

년도	번호	소 별	성 명	연령	죄 명	사 망 원 인	비 고
'99	16	광 주(교)	김 병 현	25	성폭력 등	자 살	미 결
	17	천 안(소)	오 정 수	17	성폭력 등	자 살	단기2년 장기2년6월
	18	대 구(교)	신 상 호	41	폭 력	당뇨병성 케톤성산증	미 결
	19	진 주(교)	강 호 태	35	특 가 법 (도주차량)	심장마비, 뇌출혈 등	미 결

10. 이감규정 및 '98. 8월부터 '99. 9월까지 전국 교도소별 이감현황

○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수용구분(법무부 예규)에 따라

- 미결수용자는 재판관할지역 소재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수형자는 범수, 연령, 성별, 죄명 등을 참작하여 해당교도소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 '98. 8월부터 '99. 9월 현재까지 전국 교정시설별 이송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전국 교정시설별 이송현황

붙임 # 전국 교정시설별 이송현황 ('98. 8. 1 - '99. 9. 30)

구분 / 기관	이송횟수	이송인원	비고
계	6,255	58,694	
서 울(구)	203	3,594	
안 양(교)	198	2,009	
영등포(구)	179	2,493	
성 동(구)	139	4,793	
수 원(구)	431	3,407	
인 천(구)	169	2,232	
영등포(교)	124	1,940	
수 원(교)	39	93	
의정부(교)	179	1,499	
춘 천(교)	88	800	
원 주(교)	114	588	
강 릉(교)	104	659	
평 택(지)	104	594	
대 구(교)	219	3,602	
청 송(교)	304	550	
부 산(구)	215	6,095	
부 산(교)	139	1,700	
마 산(교)	193	1,697	
청송 1(감)	42	392	
청송 2(감)	31	38	
청송 2(교)	82	338	
대 구(구)	101	1,671	
김 천(소)	196	1,053	
진 주(교)	162	1,178	
안 동(교)	197	668	
울 산(구)	130	703	
경 주(교)	145	1,070	
대 전(교)	366	2,094	
천 안(소)	17	39	
청 주(교)	148	1,306	
천 안(개)	13	16	
공 주(교)	167	635	
청 주(여)	28	35	
홍 성(교)	170	1,128	
천 안(지)	120	758	
논 산(지)	65	413	
광 주(교)	195	2,003	
전 주(교)	147	755	
목 포(교)	158	995	
군 산(교)	166	1,194	
순 천(교)	175	1,447	
제 주(교)	16	195	
장 흥(교)	77	225	

25. 전국 교도소 수용실태 (1992 ~ 1999. 9)

ㅇ 전국 교정시설의 연도별 수용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년도	수용정원	수용인원			수용밀도
		계	기결	미결	
'92.12월말	55,300	53,200	31,499	21,701	1.8
'93. 〃	55,300	56,409	33,294	23,115	1.9
'94. 〃	55,450	58,762	33,706	25,056	2.01
'95. 〃	55,450	59,315	33,335	25,980	2.03
'96. 〃	57,360	58,131	32,939	25,192	1.93
'97. 〃	57,660	62,982	34,373	28,609	2.07
'98. 〃	56,500	70,036	36,811	33,225	2.26
'99. 9.28	58,000	68,101	39,867	28,234	2.16

23. (1) '99. 8월 현재 전국 교도소 · 구치소(대용시설 포함)별 수용능력 및 재소자 현황 (미결 · 기결분류, 독거실 재소인원)

(2) '99. 1월부터 8월말사이 전국 교도소 · 구치소(대용시설 포함)중 수용능력 대비 재소자 최소 및 최다 인원 현황

==========

1) '99. 8. 31 현재 전국 교도소 · 구치소별 수용능력 및 수용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 전국 교정시설 수용현황

2) '99. 1 ~ 8월말까지 전국 교도소 · 구치소중 수용능력 대비 재소자 최소 및 최다 인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기관명	수용정원	수용인원	평당수용밀도	비 고
최소수용	대구구치소	1,350명	1,148명	1.57명	
최다수용	경주교도소	500명	892명	2.91명	

※ 보호감호소, 개방교도소 등 특수기능시설은 제외

붙임 #

○ 전국 교정시설 수용현황 ('99. 8.31현재)

구분 / 소별	수용정원	수용인원현황			독거실인원
		현원	기결	미결	
계	58,000	68,291	39,710	28,581	2,307
서 울(구)	3,200	4,089	812	3,277	75
안 양(교)	2,900	3,155	2,121	1,034	103
영등포(구)	1,780	2,379	401	1,978	79
성 동(구)	1,930	2,285	327	1,958	26
수 원(구)	1,950	2,724	444	2,280	38
영등포(교)	1,400	1,906	1,346	560	16
인 천(구)	2,050	2,514	491	2,023	46
수 원(교)	1,070	952	952	0	12
의정부(교)	1,700	2,115	1,521	594	26
춘 천(교)	1,100	1,559	1,125	434	92
원 주(교)	990	1,389	1,276	113	150
강 릉(교)	400	501	269	232	9
평 택(지)	250	352	77	275	0
대 구(교)	2,670	3,030	2,208	822	118
청 송(교)	1,850	1,796	1,796	0	74
부 산(구)	2,300	3,029	558	2,471	160
부 산(교)	1,750	2,102	1,787	315	108
마 산(교)	1,780	2,454	1,448	1,006	36
청송 1(감)	1,450	883	883	0	56
청송 2(감)	1,430	748	748	0	12
청송 2(교)	1,000	762	762	0	240
대 구(구)	1,350	1,693	341	1,352	48
김 천(소)	1,150	1,296	1,060	236	5
진 주(교)	1,440	1,790	1,433	357	30
안 동(교)	970	1,294	1,136	158	47
울 산(구)	630	842	179	663	16
경 주(교)	500	713	306	407	12
대 전(교)	2,940	4,036	2,632	1,404	366
천 안(소)	1,350	1,206	1,206	0	15
청 주(교)	1,150	1,571	951	620	18
천 안(개)	430	150	150	0	0
공 주(교)	800	1,053	986	67	19
청 주(여)	340	457	457	0	14
홍 성(교)	570	724	371	353	7
천 안(지)	330	299	56	243	4
논 산(지)	350	390	290	100	4
광 주(교)	2,390	2,909	1,689	1,220	58
전 주(교)	1,590	1,995	1,298	697	103
목 포(교)	1,500	1,694	1,430	264	21
군 산(교)	1,250	1,535	1,225	310	16
순 천(교)	1,030	853	415	438	16
제 주(교)	520	588	295	293	4
장 흥(교)	400	479	452	27	8
소록도(지)	70	0	0	0	0

3. '99. 9월 현재 전국 교도소(구치소) 현황
- 수용 적정인원, 현재 수용인원, 평당 수용인원
- 교도관 정원, 현 인원, 교도관 1인당 재소자 담당인원, '98. 8월 이후 교정공무원의 증감현황

==========

○ 전국 교정시설 수용정원(적정인원), 수용현원, 평당 수용인원

('99. 9. 30현재)

수용정원	수용현원	평당 수용인원
58,000명	68,416명	2.17명

○ 교정공무원 정원, 현원, 교도관 1인당 수용자 담당인원 및 '98. 8월 이후 교정공무원의 증감현황

- 교정공무원(교정직) 정원 및 현원 ('99. 9. 30현재)

구 분	정 원	현 원
인 원	10,957명	10,445명

- 교도관 1인당 수용자 담당인원은 약 6.2명입니다

- '98. 8월이후 교정공무원(교정직) 증감현황

구 분	'98년도	'99년도	'99. 9. 30현재 정 원
증 감	+75명		10,957명

※ 증원된 인원은 대구구치소 신설요원임

22. 교도소 · 구치소 수용자 과밀현황과 해소대책
- '97. 9 ~ '98. 8 / '98. 9 ~ '99. 8

==========

○ 교정시설의 수용현황

구분 / 년월	수용정원	수 용 인 원			수용밀도	비 고
		계	기 결	미 결		
'98. 8	56,500	68,246	36,393	31,853	평당 2.22명	
'99. 8	58,000	68,291	39,710	28,581	평당 2.16명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 경미사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확대
- 법원과 협조, 구속사건의 신속한 재판진행
-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
- 교정시설간 조절이송으로 수용인원 평준화 도모
- 장기적으로 교정시설을 신·증축해 나가는 등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4. '99. 9월 현재 전국 교도소의 분류 현황(초범교도소, 재범교도소, 중구금시설 등)과 교도소별 훈련내역(남녀 재소자별 분류)

==========

○ '99. 9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대 상	교 정 기 관
구치소 (11개소)	미결수용자 수용 ※ 기결(관용부) : 초범수용	서울(구), 영등포(구), 성동(구), 수원(구), 인천(구), 부산(구), 대구(구), 울산(구), 천안(지소), 평택(지소), 논산(지소)
초범소 (10개소)	초범수형자 수용	영등포(교), 의정부(교), 원주(교), 청주(교), 군산(교), 순천(교), 부산(교), 마산(교), 장흥(교), 경주(교)
2 범소 (8개소)	2범수형자 수용	춘천(교), 강릉(교), 진주(교), 안동(교), 공주(교), 홍성(교), 전주(교), 목포(교)
3범이상 (6개소)	3범이상수형자 수용	안양(교), 대전(교), 대구(교), 광주(교), 청송(교), 청송2(교)
특수기능소 (8개소)	과실범, 사회적응훈련 대상자 등 기능별로 분류수용	수원(교), 청주여자(교), 천안개방(교), 천안·김천소년(교), 청송1,2(감호소), 제주(교)

○ 수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 과실범 전담교도소, 여자 및 소년교도소, 개방교도소, 보호감호소 등 특수기능시설에는 관련수형자를 수용,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 일반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의 개인별 자질, 적성, 범죄경력 등에 따라 학과교육, 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을 실시합니다

5. '98. 1월부터 '99. 9월 현재까지 법무부와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접수된 재소자 청원의 총 건수와 내용별 분류, 사후 처리내역

==========

○ 수용자 청원의 총건수와 처리결과 내역 ('98. 1월 ~ '99. 9월 현재)

구분 / 처리내역	계	감 형, 가석방요망	처우개선 요 망	부당대우 조사요망	기 타
계	180	10	86	64	20
처우에 반영	41	2	27	10	2
기각 및 각하	73	6	38	19	10
심 사 중	56	2	18	29	7
청원취하	10		3	6	1

※ 청원내용으로 부적합하여 각하 또는 기각처리된 사안도 내용을 감안, 처우에 참고토록 하였음

26. 각 교정시설별 냉·난방 시설

==========

○ 각 교정기관의 냉.난방 시설은

- 현대식으로 신.개축한 서울구치소 등 12개 시설외에 대부분의 구시설은 난방장치가 미비하여 겨울철에는 난로, 온풍기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용시설 난방장치 개선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98년도에 의정부 등 4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 앞으로 예산사정을 감안, 기타시설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신.개축하는 시설은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8. 전국 교도소, 구치소에 배당된 난방비 예산과 운영실태

==========

○ 전국 교정시설에 배정된 수용자 난방비 예산은 25억 5,167만원입니다

○ 난방비는 기획예산처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각 지역의 기온을 고려하여 연간 55일 ~ 105일까지 난방일수를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2. '99. 9월 현재 전국 교도소(구치소)내 각 거실의 급수시설(수도), 화장실 상태(수거식 혹은 수세식 분류), TV 설치 현황

○ '99. 9월 현재 전국 교정기관 수용거실내 급수시설 등의 설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수시설 : 수용거실중 79.6%는 거실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거실내에 미 설치된 곳은 사동내에 공동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 수세식 화장실 : 76.5%의 거실에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재래식 화장실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

· TV : 대구교도소 등 23개기관에 3,612대를 설치하였으며, 2002년까지 전 거실에 설치예정임

○ 현재 연차적 계획에 의거 매년 수용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 '99. 9월 현재 전국 교도소, 구치소의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과 소각장 운영기준과 실태

○ 전국 교도소, 구치소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중
  - 신문지, 공박스, 우유팩, 프라스틱 패트병 등은 재활용 하고
  -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자체 소각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연탄재, 불연성 생활쓰레기, 건축 폐기물 등은 유료 처리

○ 소각가능 쓰레기는 각 기관에 설치된 소각로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로 설치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전국 교정시설 소각로 설치현황

붙임 #

○ 전국 교정시설 소각로 설치현황

구분 / 소별	설치 용량 (Kg/h)	설치 년도	비 고
서 울(구)	95	'98	
대 구(교)	95	'98	
대 전(교)	90	'95	
청 송(교)	90	'94	
부 산(구)	95	'99	
안 양(교)	95	'98	
광 주(교)	95	'98	
영등포(구)	90	'93	
성 동(구)	95	'98	
수 원(구)	90	'96	
전 주(교)	90	'94	
영등포(교)	90	'93	
수 원(교)	90	'96	
인 천(구)	50, 45	'97, '98	
부 산(교)	70	'97	
마 산(교)	90	'95	
청송1(감)	90	'94	
청송2(감)	95	'94	
천안소년	90	'95	
청 주(교)	95	'97	
의정부(교)	80	'94	
청송2(교)	80	'94	
대 구(구)	95	'98	
춘 천(교)	90	'95	
김천소년	90	'95	
진 주(교)	50	'96	
목 포(교)	80	'96	
군 산(교)	90	'95	
천안개방	30	'96	
순 천(교)	95	'97	
원 주(교)	90	'96	
안 동(교)	80	'96	
공 주(교)	90	'97	
울 산(구)	50	'96	
청주여자			청주(교) 공동사용
경 주(교)	50	'96	
제 주(교)	30	'94	
홍 성(교)	50	'96	
강 릉(교)	95	'97	
장 흥(교)	80	'97	
논산(구지))	50	'98	
천안(구지)	30	'98	
평택(구지)	50	'96	
계	43대		

1. 의정부교도소에서 취재중이던 「PD수첩」 취재팀에게 속칭 "건달징역" 실상을 폭로했던 일부 재소자들이 조사실(독방)에 격리수용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 상세한 현황(일시, 재소자명, 격리기간, 사유)
   - 조사실에 격리수용한 근거(규정)
   - 취재팀이 재소자 및 교도소 내부를 직접 촬영(취재) 할 수 있었던 허가 내역

==========

○ '99. 1월 MBC 방송국에서 교정시설의 인권현황을 사실적으로 보도하기위해 취재요청을 하여 의정부(교) 등 3개기관의 촬영을 허용하였음

○ 의정부교도소 취재시 수형자 정정곤, 최철호가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확인이나 명확한 근거없이 교도소내에 조직폭력배의 횡포가 심하다는 등의 말을하여

○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99.1.10 - 1.23까지 각각 조사거실에 분리수용

- 조사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각각 경고 조치한 바 있음

○ 조사거실에 분리수용한 것은 행형법시행령 제143조에 의한 것임

※ 행형법 시행령 제143조
- 소장은 징벌혐의자로서 조사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독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2. 부산구치소 관련

- 교도관 재소자 폭행사건 수사결과
- 재소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히로뽕 양성반응을 나타낸 재소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 히로뽕 반입과 투약경위 및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결과
- 영남위사건 재소자와 일반재소자간의 충돌사건 조사결과
- 부산구치소가 99. 8. 31.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천정규변호사 등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된 동기 및 고소사건 수사결과

==========

○ 재소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히로뽕 양성반응을 나타낸 재소자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 '99. 8. 24 부산구치소 재소자가 같은 사방에 수감 중인 양경덕이 메스암페타민을 몰래 반입하여 이를 재소자 수명이 투약하였다고 부산지검 마약전담검사에게 제보함에 따라,
- 검찰은 같은날 18:00 부터 22:00까지 동 구치소 3동하 10실, 5동하 4실을 검색하고, 재소자들을 상대로 간이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소자 김동환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났습니다.

○ 히로뽕 반입과 투약 경위 및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결과

- 반입경위를 조사한 결과, 재소자 양경덕은 같은해 5. 18. 메스암페타민 투약혐의로 경찰에 구속될 당시 메스암페타민 약 2그램을 팬티의 겉감과 안감 사이에 은닉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해 5. 26. 부산구치소 수감시 반입한 것입니다.
- 위 양경덕은 이와같은 방법으로 반입한 메스암페타민을 같은해 8. 20. 07:00경 수감중인 3동하10실 사방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식수와 함께 투약하고, 같은날 08:30경 5동하 4실에 수감중인 김병철을 찾아가 동인에게 약 0.03그램을 교부하고, 같은 달 23. 13:00경 구치소측의 조사 착수를 눈치채고 나머지 약 1.94그램을 세면장에 버린 것입니다.
- 또한, 위 김병철은 위와같이 교부받은 메스암페타민을 자신의 손가방에 은닉·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달 23. 10:00경 같은 사방에 수감중인 김동환이 위 김병철이 은닉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몰래 꺼내 식수에 타서 투약한 것입니다.
- 따라서 검찰은 위 양경덕, 김병철, 김동환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같은해 10. 1. 입건하여 구공판하였습니다.
- 그동안 검찰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는 면회·출정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철저한 검색 및 차단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정당국과 더욱 협조하여 재소자에게 마약류가 밀반입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교도관 재소자 폭행사건 및 영남위사건재소자와 일반 재소자간의 충돌사건은 부산지검에서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 99. 8. 26. 천정규변호사가 「구치소측이 일반수들을 동원, 공안수들의 난동을 진압하거나 회의중인 공안수들을 해산하였다」는 취지의 재소자 송원기 작성 청원서를 마치 사실인양 언론에 공표하자, 부산구치소장 등은 위의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8. 31. 위 송원기와 천정규변호사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부산지검에서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 위 사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어 결과가 나오지 않아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부산교도소 재소자 필로폰 반입 및 폭행사건 경위 및 조치결과
(일반재소자 - 공안사범간 패싸움 사주의혹 등)

==========

1. 폭행사건 경위

○ 부산구치소 수용자 김남철(향정신성의약품법위반, 4범)이 같은 거실 수용자 양경덕이 필로폰을 복용하였다고 신고,

○ '99. 8.24, 20:10경 부산지검 마약수사반 직원이 거실검사 및 소변 채취를 하자 이에 불만을 가진 수용자 4명이 입실을 거부하며 방문을 차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 즉시 제지하여 격리수용하자

○ 다른 수용자 17명이 소란자 4명의 격리수용에 항의하여 거실문을 차고 소란행위를 하여 전원 격리 수용함
- 이과정에서 일부수용자들은 손에 찬 수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등 거칠게 반항하다 이마 등에 찰과상을 입음

○ '99. 8.25, 06:30경 및 '99. 8.26, 10:00경에 일부수용자가 또 다시 큰소리치며 소란행위를 하여 격리 수용함

○ 이와같은 소란행위의 진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호마찰을 하고 수갑에 부딪치는 등으로 일부수용자가 경미한 상처를 입었으나 직원의 폭행에 의한 것은 아님

2. 필로폰 반입경위

○ 앞 내용과 같이 수용자의 필로폰 복용사실을 신고받고, 즉시 같은 거실 수용자 7명을 분리수용, 정밀수색을 실시하였으나 필로폰 발견못함

○ 수용자 7명의 소변을 채취, 마약반응검사(TBPE)를 실시한 결과 1명이 양성반응을 보임

○ 다시 향정사범 28명의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의뢰, 전원 음성반응을 보였음

3. 패싸움 사주 의혹

○ '99. 3. 26, 10:40경 제1사동 하층 복도에서 이발중이던 공안관련사범 이철현과 사동근무자 사이에 사소한 시비가 있었으며, 동일 16:00경 공안관련사범 이철현, 정대연 등 7-8명이 오전 사건에 대한 사과를 하라며 사동 근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소란을 하자

○ 마침 접견 등을 위하여 출실해 있던 일반수용자 송원기 등 10여명이 이를 목격하고 공안수들이 직원에게 너무 지나치게 행동한다면서 만류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쟁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직원에게 제지당한 사실이 있음

○ 당시 공안관련 사범들과 언쟁을 했던 일반수와 거실에서 이를 목격했던 수용자의 진술에 의하면 공안관련사범들이 담당직원을 심하게 밀치는 등 너무 과격하게 행동하여 이를 만류한 것이라 함

○ 또한 직원이 자신에게 공안사범들을 폭행하도록 사주하였다는 말을 한 송원기라는 수용자도 직접 사주를 받은 적은 없으며, 평소 직원들이 공안수들 때문에 근무가 어렵다고 푸념을 하는 것을 듣고 질서유지에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함

○ 이와관련 부산구치소 직원일동과 당시 관구계장이 천정규 변호사와 수용자 송원기를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99. 8. 31 부산지검에 고소를 제기함

4. 조치결과

○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위 3건에 대하여 수사중에 있으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1. 전국 검찰청 구치감의 면적과 평수

o 위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별첨 : 전국 검찰청 구치감의 면적과 평수 1부.

전국 검찰청 구치감의 평수와 면적

구 분	방실 평형별 면적(평)	비 고
서울지검	4.7㎡ 형 96개 7.6㎡ 형 24개 9.5㎡ 형 24개 12㎡ 형 24개 총 1,149㎡(347평)	
동부지청	12.87㎡ 형 4개 3.63㎡ 형 2개 총 58.74㎡(17.7평)	
남부지청	4.1㎡ 형 3개 11.8㎡ 형 4개 14.35㎡ 형 1개 4.126㎡ 형 5개 15.77㎡ 형 2개 19.6㎡ 형 4개 17.35㎡ 형 1개 33:215㎡ 형 1개 총 254.5㎡(77.08평)	
북부지청	12.87㎡ 형 8개 10.56㎡ 형 3개 8.91㎡ 형 1개 3.564㎡ 형 8개 총 172.2㎡(52.14평)	
서부지청	4.21㎡ 형 3개 4.72㎡ 형 6개 6.89㎡ 형 4개 10.08㎡ 형 2개 10.4㎡ 형 1개 10.82㎡ 형 4개 12.24㎡ 형 4개 12.62㎡ 형 1개 14.15㎡ 형 2개 총 232.06㎡(70.26평)	
의정부지청	15.75㎡ 형 1개 4㎡ 형 8개 10㎡ 형 1개 18㎡ 형 2개 13.5㎡ 형 2개 3㎡ 형 1개 총 127.16㎡(38.5평)	

구 분	방실 평형별 면적(평)	비 고
인천지검	3.6㎡ 형 8개 12㎡ 형 6개 총 100.8㎡(30.49평)	
부천지청	4.5㎡ 형 6개 9㎡ 형 9개 15㎡ 형 7개 21㎡ 형 7개 총 360㎡(108.9평)	
수원지검	16㎡ 형 9개 24㎡ 형 2개 28㎡ 형 1개 30㎡ 형 1개 32㎡ 형 1개 36㎡ 형 3개 48㎡ 형 1개 총 438㎡(132.6평)	
성남지청	15.75㎡ 형 2개 13.43㎡ 형 1개 10㎡ 형 1개 4㎡ 형 8개 18㎡ 형 1개 33.5형 1개 총 137.07㎡(41.5평)	
여주지청	13㎡ 형 1개 5㎡ 형 1개 총 18㎡(5.4평)	
평택지청	49.5㎡ 형 4개 총 198㎡(59.9평)	
춘천지검	3.6㎡ 형 6개 12㎡ 형 4개 총 69.6㎡(21평)	
강릉지청	14.6㎡ 형 3개 33.7㎡ 형 6개 총 246㎡(74.4평)	
원주지청	6.6㎡ 형 6개 9.9㎡ 형 2개 3.3㎡ 형 4개 총 72.6㎡(21.9평)	
속초지청	5.8㎡ 형 2개 1.8㎡ 형 4개 총 18.8㎡(5.7평)	
영월지청	13.4㎡ 형 3개 3.8㎡ 형 3개 총 51.5㎡(15.6평)	

구 분	방실 평형별 면적(평)	비 고
대전지검	8.93㎡ 형 8개 9.72㎡ 형 12개 5.95㎡ 형 8개 10.88㎡ 형 2개 17.82㎡ 형 4개 5.6㎡ 형 4개 총 350.01㎡(106.02평)	
홍성지청	23.1㎡ 형 15개 총 346.5㎡(104.9평)	
공주지청	3.6㎡ 형 2개 10.8㎡ 형 2개 9㎡ 형 2개 총 45.58㎡(13.8평)	
논산지청	12㎡ 형 2개 6㎡ 형 2개 총 35.67㎡(10.8평)	
서산지청	22.3㎡ 5개 총 111.5㎡(33.7평)	
천안지청	9.75㎡ 형 2개 18㎡ 형 4개 24㎡ 형 1개 25.26㎡ 형 1개 21.609㎡ 형 1개 20.52㎡ 형 1개 총 241.7㎡(73.2평)	
청주지검	12.56㎡ 형 1개 11.57㎡ 형 2개 16.2㎡ 형 1개 7.6㎡ 형 4개 15.2㎡ 형 10개 총 234.1㎡(70.9평)	
충주지청	20.77㎡ 형 1개 11.96㎡ 형 2개 3.59㎡ 형 3개 총 55.45㎡(16.79평)	
제천지청	12.5㎡ 형 4개 총 49.5㎡(15평)	
영동지청	6.6㎡ 형 1개 16.5㎡ 형 1개 9.97㎡ 형 1개 총 33.03(10평)	

구 분	방실 평형별 면적(평)	비고
대구지검	142㎡ 형 10개 28㎡ 형 4개 66㎡ 형 2개 총 236.4㎡(71.6평)	
안동지청	9.96㎡ 형 6개 22㎡ 형 1개 총 81.9(24.8평)	
경주지청	21.6㎡ 형 1개 18.6㎡ 형 1개 9.9㎡ 형 2개 8.58㎡ 형 2개 8.4㎡ 형 2개 6.24㎡ 형 1개 5.5㎡ 형 2개 4㎡ 형 1개 총 115㎡(34.8평)	
포항지청	5㎡ 형 8개 6㎡ 형 4개 8㎡ 형 2개 11㎡ 형 10개 12㎡ 형 4개 18㎡ 형 1개 총 255.6㎡(77.4평)	
김천지청	104.5㎡ 형 1개 84.26㎡ 형 1개 총 183.3㎡(55.5)	
상주지청	15.84㎡ 형 2개 18.184㎡ 형 1개 총 39.8㎡(12.08평)	
의성지청	14.07㎡ 형 1개 13㎡ 형 1개 4㎡ 형 1개 총 31.07㎡(9.4평)	
영덕지청	7.4㎡ 형 2개 6.39㎡ 형 4개 총 40.29㎡(12.2평)	
부산지검	3.8㎡ 형 8개 23.7㎡ 형 4개 3.8㎡ 형 18개 23.7㎡ 형 20개 총 666.5㎡ 201평	
부산동부	7㎡ 형 48개 13㎡ 형 104개 4㎡ 형 48개 16㎡ 형 4개 6㎡ 형 2개 총 343.7㎡(104평)	

구 분	방실 평형별 면적(평)	비고
울산지검	18㎡ 형 1개 15.75㎡ 형 1개 13.5㎡ 형 1개 10㎡ 형 1o개 4㎡ 형 6개 18㎡ 형 1개 27.5㎡ 형 1개 총 126.2㎡(38.2평)	
창원지검	3.97㎡ 형 18개 7.96㎡ 형 22개 15.93㎡ 형 12개 총 438㎡(132.6평)	
진주지청	10.9㎡ 형 4개 3.04㎡ 형 2개 10.68㎡ 형 1개 12.17㎡ 형 1개 6.6㎡ 형 1개 10.55㎡ 형 1개 11.83㎡ 형 1개 총 101.7㎡(30.81평)	
통영지청	1.35㎡ 형 4개 9㎡ 형 4개 10.8㎡ 형 2개 총 62.9㎡(19.07평)	
밀양지청	3㎡ 형 6개 2㎡ 형 8개 총 33.9㎡(10.29평)	
거창지청	21㎡ 형 4개 총 84.03㎡(25.4평)	
광주지검	14㎡ 형 9개 7㎡ 형 5개 총 160.8㎡(48.7평)	
목포지청	2.6㎡ 형 8개 8.4㎡ 형 6개 총 69.3㎡(21평)	
장흥지청	4.8㎡ 형 2개 12㎡ 형 2개 10.2㎡ 형 1개 35.86㎡ '형 1개 총 79.6㎡(24.1평)	
순천지청	2.2㎡ 형 8개 6.6㎡ 형 4개 6.9㎡ 형 2개 총 57.8㎡(17.4평)	
해남지청	3.75㎡ 형 3개 13.44㎡ 형 3개 10㎡ 형 1개 총 61.5㎡(18.6평)	

구 분	방실 평형별 면적(평)	비고
전주지검	3.75㎡ 형 8개 13.5㎡ 형 5개 총 97.57㎡ (29.54평)	
군산지청	4.83㎡ 형 8개 5.6㎡ 형 4개 6.16㎡ 형 4개 7.7㎡ 형 2개 7.56㎡ 형 2개 13.16㎡ 형 5개 총 182㎡ (55.11평)	
정읍지청	1.9㎡ 형 10개 6.38㎡ 형 5개 총 50.7㎡ (15.36평)	
남원지청	7.5㎡ 형 2개 2.6㎡ 형 4개 총 25.4㎡ (7.7평)	
제주지검	7.2㎡ 형 8개 5.4㎡ 형 4개 8.6㎡ 형 2개 9.7㎡ 형 8개 총 173.7㎡ (52.6평)	

44. 구치소 대용 경찰서 유치장 현황(유치장명, 수감인원, 기간별 수감인원등)

==========

○ 99. 8. 31.현재 구치소대용경찰서 유치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검찰청	대용감방	수감인원	비고
1	여주지청	여주경찰서	177	
2	속초지청	속초경찰서	97	
3	영월지청	영월경찰서	105	
4	서산지청	서산경찰서	31	
5	충주지청	충주경찰서	170	
6	제천지청	제천경찰서	83	
7	영동지청	영동경찰서	66	
8	상주지청	상주경찰서	94	
9	의성지청	의성경찰서	41	
10	영덕지청	영덕경찰서	36	
11	통영지청	통영경찰서	122	
12	밀양지청	밀양경찰서	57	
13	거창지청	거창경찰서	41	
14	해남지청	해남경찰서	89	
15	정읍지청	정읍경찰서	150	
16	남원지청	남원경찰서	31	
총계			1,390	

○ 다만, 기간별 수감인원에 대해서는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일 수감인원이 증감함에 따라 수감인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명령 시행 평가보고서

1. 연도별 접수(최근 5년간)

년 도	'94	'95	'96	'97	'98
인 원	5,331	5,405	8,019	28,361	39,614

○ '96년까지 사회봉사명령 사건 점증, '97년 성인범 확대이후 사건 급증

- 연평균 증가율 : 128.6%
- 개시사건 기준 '98년 39,614건으로 '97년 28,361건에 비하여 11,253명 (39.7%) 증가

※ 성인범 확대 이후인 '97년은 소년범에 한해 시행하던 '96년과 비교, 사건급증으로 단순비교는 무의미하여 성인범 확대 이후인 '97년 및 '98년을 중심으로 분석·평가

2. '97 ~ '98년 접수

'97년					'98년						전년대비증감율(%)
계	보호처분		집행유예		계	보호처분			집행유예		
	2호	3호	보호관찰	독립명령		2호	3호	가정보호	보호관찰	독립명령	
30,551	4,573	8,751	3,194	14,033	46,637	5,122	10,755	50	6,212	24,498	52.7

○ 사회봉사명령 사건 증가율 : 실시인원 기준 전년대비 52.7% 증가

- 실시인원 : 전년이월 + 금년 접수(개시)

3. 처분법률

구분	계 (%)	'98								
		소 년					성 인			
		소계	형법	소년법	성폭력법	가 정 폭력법	소계	형법	성폭력법	가 정 폭력법
계	46,637	19,263	3,299	15,877	86	1	27,374	27,110	215	49
점유율(%)	100.0	41.3	7.1	34.0	0.2	-	58.7	58.1	0.5	0.1

○ 전체 실시인원중 성인이 58.7%로 소년의 41.3%를 능가

○ 소년은 소년법상의 대상자가, 성인은 형법상의 대상자가 많은 비율 차지

4. 죄명

구분	'98년											
	계	폭력	절도	성폭력	강도	환각, 마약	교통	공갈, 협박	사기, 횡령	보건, 환경	집시법 위 반	기타
계	39,614	11,054	8,123	1,301	2,244	1,208	9,972	172	2,087	560	154	2,739
점유율(%)	100.0	27.9	20.5	3.3	5.7	3.0	25.2	0.4	5.3	1.4	0.4	6.9

○ 사회봉사명령은 폭력, 교통, 절도사범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집시법위반, 공갈·협박사범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활용

5. 명령 부과시간

구분	계	'98년					
		50이하	51-100	101-200	201-300	301-400	401-500
계	39,614	6,777	12,638	18,081	1,755	319	44
점유율(%)	100.0	17.1	31.9	45.7	4.4	0.8	0.1

○ 101-200시간의 점유율이 가장 높고, 51-100시간의 순임

- 51-200시간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 시간대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

6. 집행

구분	'98년							현재원
	접 수			종 료				
	계	이 월	신 수	계	집 행	이 송	집행불능	
계	46,637	7,023	39,614	40,430	37,506	1,743	1,181	6,207
점유율(%)	100.0	15.1	84.9	100.0	92.8	4.3	2.4	

○ '97년 대비 대상자의 증가율이 높음에도 불구, 높은 집행율을 보이는 것은 기관별 보호관찰 실적분석을 통한 집행 독려 및 협력기관의 적극 활용 등 집행의 체계화를 기한 것이 주된 이유

7. 집행불능 사유

구분	'98년								
	계	군입대	형집행	보호처 분변경	보호처 분취소	집행유 예취소	사망	기간 만료	기 타 (사면)
계	1,181	142	175	160	160	95	39	35	375
점유율(%)	100.0	12.0	14.8	13.5	13.5	8.1	3.3	3.0	31.8

○ 집행불능자의 대부분은 사면 또는 명령 불이행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자로서 순수한 집행불능자는 기간만료자 35명에 불과

8. 협력기관

구 분	'98년					
	계(개소)	행정분야	공익분야	의료분야	복지분야	기타분야
계(개소)	1,448	435	493	90	338	92
점유율(%)	100.0	30.0	34.0	6.2	23.3	6.4

○ 협력기관은 공익, 행정, 복지분야가 대부분

9. 분야별 집행인원

구 분	'98년							
	계	자체집행	협력집행					
			소 계	행정분야	공익분야	의료분야	복지분야	기타분야
계	37,506	3,834	33,672	5,895	15,552	2,689	7,959	1,577
점유율(%)	100.0	10.2	89.8	15.7	41.5	7.2	21.2	4.2

○ 협력기관 현황 중 행정분야는 30.0%를 점유하고 있으나, 집행 내용상으로는 15.7%를 점유, 협력기관 수에 비하여 실제 활용율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

- 행정기관의 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10. 제재조치

구분	'98년						
	계	구인	긴급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 소	보호처분 변 경	기간연장
계	1,490	465	118	565	124	197	21
점유율(%)	100.0	31.2	7.9	37.9	8.3	13.2	1.4

27. 집중감독보호관찰프로그램 기획안, 진척상황('99. 8. 31)

==========

□ 집중감독보호관찰프로그램 기획안, 진척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중감독보호관찰프로그램(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 : ISP)은 재범가능성이 높은 자이거나 연령이 어린 자들과 정신적·인격적 문제를 가진 자들을 주요대상으로 매일 학교나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접촉하는 제도이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동 프로그램은 강도 높은 감시·감독으로 자유형의 선고를 대체하면서 효과적으로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전자감시프로그램과 병용시 효과는 倍加됨

○ 법무부에서는 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외국의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나 현재의 보호관찰 인력으로는 효과적인 시행이 곤란한 실정으로 동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인력이 확충되는 경우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

26. 전자감시프로그램 기획안, 진척상황('99.8.31' 현재)

==========

□ 전자감시프로그램 기획안, 진척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99. 1. 전자감시프로그램(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 EMP) 도입 연구반 구성

○ 1999. 5. EMP 관련 해외자료 수집

○ 1999. 10. 영국의 EMP 운영실태 견학(10. 17 ~ 10. 24)
· 영국정부의 해당부처와 협의 완료

○ 1999. 11. 미국·영국 등 외국의 EMP 운영실태 사례집 발간

○ 2000. 3.~4. 선진국의 EMP 운영과정 참관
· 미국, 영국 각 1개월간

○ 2000. 선진외국의 EMP 시행과 관련, 법적·실무적 문제점 검토 연구

○ 2001.~2002. '가석방자' 등에 대한 EMP 시행 규정 마련
· 법무부 훈령 제정
· EMP 시스템 구축 및 장비관련 시제품 개발

○ 2003.~2004. 시험실시에 대한 평가 및 제도 완비
· 시험실시에 대한 평가보고회 및 공청회 개최, 문제점 보완
·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시스템 완비

○ 2005. EMP 시행

24. '99년 9월 현재 보호관찰과 보호감호자의 총 수

○ 피보호감호자 수 ('99.9.30 현재)
- 1,636 명

○ 피보호관찰자 수 ('99.9.30 현재)
- 52,689명

13. 최근 3년간 보호감호처분 대상자 및 현황(처분기간, 재입소율)

==========

○ 최근 3년간 보호감호처분 대상자 현황은 총 1,172명으로 '97년도 461명, '98년도 409명, '99년도 302명 임

○ 최근 3년간 출소인원은 총 1,440명으로 '97us도 531명, '98년도 565명, '99.8.31.현재 344명이며, 출소자들의 평균 수용기간은 4년7월6일임

○ 위 기간동안 보호감호소에 재입소한 자의 인원은 총 246명으로 '97년도 56명, '98년도 106명, '99.8.31.현재 84명이며, 총수용인원 1,172명중 20.9%를 차지하고 있음

18.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98년 1월- '99년 8월 현재 수용정원 및 수용인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구분 / 월별	수용정원	수용인원	구분 / 월별	수용정원	수용인원
'98. 1	2,680	2,722	'98. 1	1,020	898
2	〃	2,583	2	〃	864
3	〃	2,506	3	〃	898
4	〃	2,418	4	〃	1,099
5	〃	2,425	5	〃	1,228
6	〃	2,486	6	〃	1,284
7	〃	2,517	7	〃	1,179
8	〃	2,510	8	〃	1,114
9	〃	2,503	9	〃	1,227
10	〃	2,556	10	〃	1,199
11	〃	2,561	11	〃	1,231
12	〃	2,684	12	〃	994
'99. 1	〃	2,619	'99. 1	〃	904
2	〃	2,546	2	〃	785
3	〃	2,462	3	〃	575
4	〃	2,548	4	〃	593
5	〃	2,316	5	〃	811
6	〃	2,369	6	〃	778
7	〃	2,408	7	〃	807
8	〃	2,483	8	〃	882
9.15	〃	2,542	9.15	〃	668

25. 소년원 현황

==========

▣ 소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용자수

('99. 8. 31 현재)

계	보 호 소 년			위탁소년
	소계	6호	7호	
3,707 (191)	2,512 (127)	852 (50)	1,660 (77)	1,195 (64)

※ ( )안은 여자

□ 분류수용 현황

○ 단기·중기·장기·특별장기로 분류된 보호소년을 지정된 소년원에 분류 수용

· 처우기간별 분류(소년원 12개소)

- 단기처우소년원 : 춘천·충주
- 단기·중·장기처우소년원 : 대구·부산·전주·청주·제주
- 중·장기처우소년원 : 서울·광주·대전
- 장기처우(특별)소년원 : 대덕지원

○ 위탁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약물남용 보호소년은 약물치료소년원에, 여자보호소년은 여자소년원에 처우과정을 지정하여 분류 수용

- 위탁소년 : 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소년분류심사원, 춘천·전주·청주·제주소년원
- 약물남용원생 전담소년원 : 대전
- 여자소년원 : 안양

○ 교육과정별로 시설을 달리하여 수용

· 교과교육소년원 : 서울·대구·춘천·충주·전주·청주

· 직업훈련소년원 : 부산·광주·대전·대덕

· 교과교육·직업훈련 병행 소년원 : 안양·제주

○ 시설내에서는 연령·비행·공범관계·성격특성 등을 기준으로 분계 또는 구획을 정하여 분리 수용, 상호접촉을 규제

□ 보호소년 재입원율

기 간	소년원 입원자	재입원자	재입월율
'98.1.1-12.31	3,520명	883명	25.0%

□ 소년원 수용사고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직원 현황

기관별	계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정원	현원	소년보호	일반	의무		
계	1,067	1,050 (결원17)	741	3	36	32	238
소년원	748	736	510	3	24	32	167
서울	79	78	55		2		18
대구	66	67	50		2	7	15
부산	68	66	43		2	5	14
광주	66	65	43		2	1	15
안양	53	52	36		2		13
춘천	68	68	51		2	9	15
대전	67	65	40		2		14
충주	55	53	39		2		12
전주	69	69	51		2		16
청주	69	67	51		2		14
제주	52	51	34		2	2	13
대덕	36	35	17		2	8	8
심사원	319	315	232		12		71
서울심	107	108	83		3		22
대구심	52	52	37		3		12
대전심	47	45	32		1		12
부산심	64	63	47		3		13
광주심	49	47	33		2		12

34. 소년 교정시설과 관련하여(95년 이후 현재까지)

- 전체 범죄대비 소년범죄 구성분포
- 소년범죄의 유형 및 처리결과
- 소년원·분류심사원·소년교도소 수용인원
- 소년교정시설의 운영현황 및 교육내용
- 소년교정시설내 징벌 집행현황
- 소년교정시설내 주요 청원현황과 내용, 처리결과
- 소년사건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의 비율
-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아동의 재범률
- 소년 형사사건 처리결과

ㅇ 전국 교정시설중 소년교도소는 천안, 김천소년교도소 등 2개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년 도	수용인원
'95년말	2,298명
'96년말	2,167명
'97년말	2,448명
'98년말	2,728명
'99. 9. 30	2,432명

ㅇ 소년수형자에게 실시하는 교육내용

- 스카우트(소년단) 교육
- 특별활동반 운영
  · 체육활동 : 권투, 배구, 농구, 에어로빅 등
  · 예능활동 : 악대, 농악, 서예, 회화, 연극반 등
- 학과교육 : 일반학과 교육외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 실시
- 직업훈련 : 정보기기운용 기능사과정 등 14개직종의 훈련을 실시

○ 소년교도소의 징벌집행 현황('95 ~ '99, 김천, 천안소년교도소)

구 분	계	금 치				청원작업 정 지	경 고
		소 계	2월	1월	20일		
'95	139	137	84	53			2
'96	100	95	61	34			5
'97	106	106	56	49	1		
'98	119	119	69	48	2		
'99. 9	122	122	70	51	1		

○ 소년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습니다

○ 이외의 나머지 요구하신 자료는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34. 소년분류심사원 수용현황(1992 - 1999).

==========

○ 소년분류심사원 수용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일평균수용인원)

기관별 \ 연 도	'92	'93	'94	'95	'96	'97	'98	'99 (8월말현재)
계	795	1,098	1,040	968	929	860	965	685
서울소년분류심사원	412	641	619	509	503	473	525	345
대구소년분류심사원	94	102	114	115	120	87	84	63
대전소년분류심사원	36	78	82	77	59	50	67	54
부산소년분류심사원	205	206	160	196	174	168	193	159
광주소년분류심사원	48	71	65	71	73	82	96	64

3) 재소자 수용관련 전국 소년원, 소년감별소별

ㅇ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별 재소자 수용을 위한 감방의 최소와 최대 규모 및 수용인원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수용실을 감방이라 하지 않고 생활실로 부르며 개별실과 집단실로 구분되는 데, 심사원에서는 분류 전 악습감염 방지를 위해 신입자만을, 소년원은 징계자를 각 개별실에 수용하고 집단실에는 기본교육과정 이수자들을 수용하고 있음.
· 개별실은 2평 정도이며 적은 것은 1.5평이며 집단실은 15평 규모임
· '99. 9. 15 현재 수용인원은 3,210명으로 수용밀도는 평당 1.0명임

ㅇ 징벌방 내부구조도 및 규모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규칙위반자에 대한 징계집행은 징벌이라 하지 않고 단독근신이라고 하며 개별실에서 근신하도록 하고 있음
· 개별실 규모는 2평정도로 1인이 생활하고 내부에 수세식변기, 세면대, 침상이 설치되어 있음
· 개별실 내부구조 : 별첨

ㅇ 징벌시 사용하는 계구종류 및 용처

· 일체 계구를 사용하지 않음

[별첨]

반성실(개별실) 내부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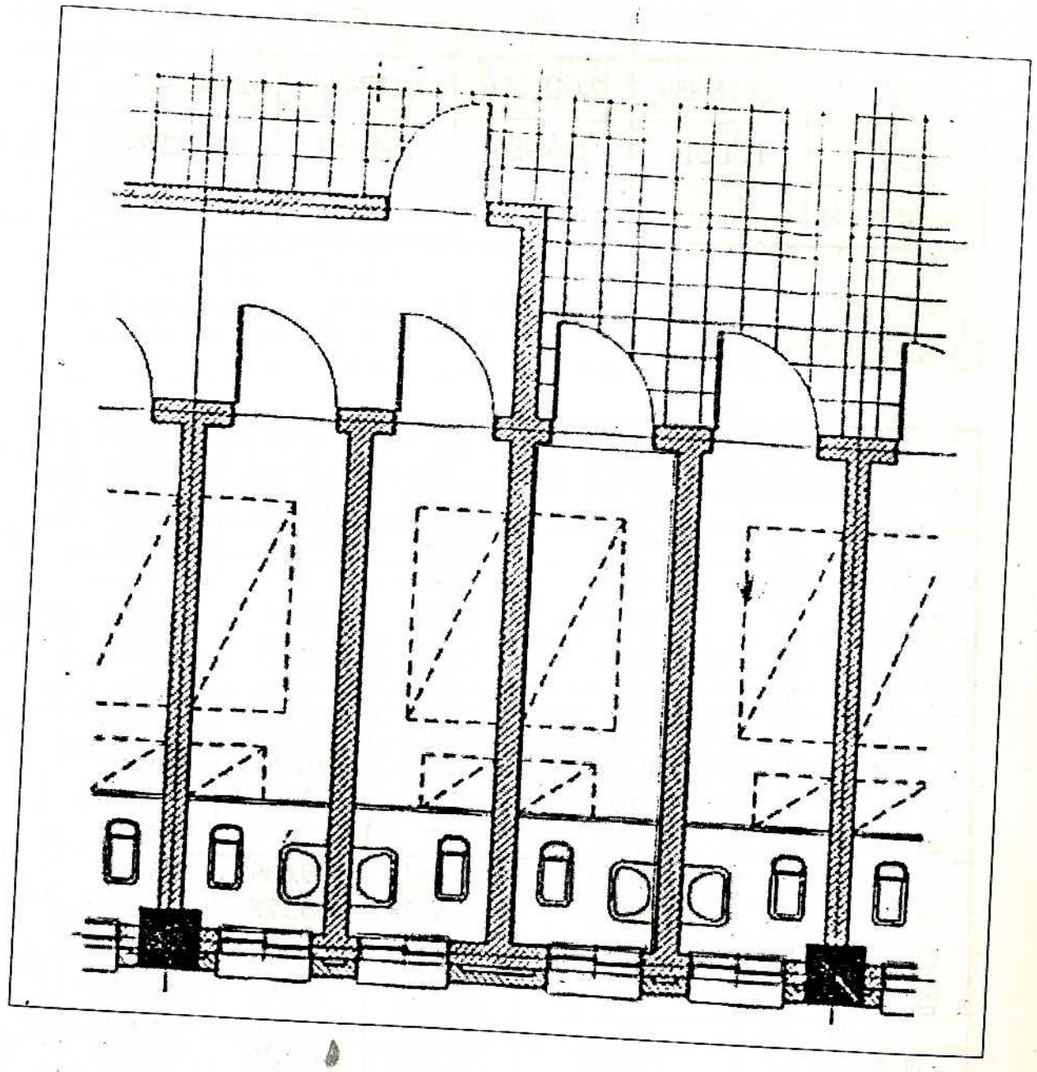

34. 소년범죄 및 소년 교정시설과 관련하여('95년 이후 현재까지)(추가)

□ 전체범죄 대비 소년범죄 구성분포

(단위 : 명)

구분 \ 연도	'95	'96	'97	'98	'99.1-8
총 범 죄	1,896,859	2,018,296	2,117,759	2,341,431	1,573,813
소년범죄	124,244	146,986	164,182	161,277	96,504
구성비율(%)	6.6	7.3	7.8	6.9	6.1

□ 소년범죄의 유형

(단위 : 명)

구분 \ 연도		'95	'96	'97	'98	'99.1 - 8
계		124,244	146,986	164,182	161,277	96,504
강력범	소 계	4,349	4,566	5,653	6,134	3,210
	살 인	65	69	79	65	46
	강 도	2,684	2,840	3,651	4,273	2,084
	강 간	1,526	1,599	1,840	1,703	1,017
	방 화	74	58	83	93	63
폭력범	소 계	47,523	53,165	62,218	57,080	36,329
	폭행·상해	46,696	52,359	61,383	56,461	35,955
	공 갈	802	769	790	557	351
	기 타	25	37	45	62	23
재산범	소 계	32,338	34,044	39,605	45,561	23,447
	절 도	28,616	29,936	35,177	39,894	19,822
	횡령·배임	1,056	955	993	887	480
	장 물	739	757	741	819	457
	사 기	1,927	2,396	2,694	3,961	2,688
교통사범		30,808	39,378	45,622	41,665	26,584
기 타		9,226	15,833	11,084	10,837	6,934

□ 소년범죄 처리결과

(단위 : 명)

구분 \ 연도	접수	처리	기소		불기소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기타	미제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안됨	형사미성년자	공소권없음	각하				
'96	148,607	146,722	19,569	32,434	2,666	62,114	790	643	5,039	84	16,023		7,360	1,885
'97	166,067	163,784	23,030	37,271	3,052	62,447	763	395	4,493	121	24,916		7,296	2,283
'98	163,560	160,855	22,229	35,261	3,407	64,063	591	244	4,342	189	22,909	18	7,602	2,705
'99 (1-8)	99,209	95,309	10,891	21,796	2,386	36,793	348	97	3,532	123	15,034	25	4,288	4,280

※ '95년 소년범죄 처리결과에 대한 통계표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95년분은 산출하지 못하였음

※ 소년범죄구성 현황과 유형별현황의 인원과 처리결과의 접수인원이 상이한 것은 접수인원은 전년도 미제와 당해연도의 순수 접수분에 전년도 미제가 포함되었기 때문임

□ 소년원·분류심사원 수용인원

연도별 \ 구분	연도별				
	'95년	'96년	'97년	'98년	'99.1-8월
계	3,396	3,462	3,769	3,685	3,236
소년원	2,428	2,533	2,909	2,720	2,443
소년분류심사원	968	929	860	965	793

□ 소년사건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의 비율

구분 \ 연도	처리인원	형사사건		보호사건		비고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96	146,722	130,699	89.1	16,023	10.9	
'97	163,784	138,868	84.8	24,916	15.2	
'98	160,855	137,928	85.7	22,927	14.3	
'99.1-8	95,309	80,254	84.2	17,055	15.8	

※ 95년 소년범죄 처리결과에 대한 통계표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95년분은

□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아동의 재범률

연도 / 재범율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9월
%	9.4	8.9	8.5	8.9	9.4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17세 미만)에 대한 통계지원 안됨. 소년법상 소년(20세미만)을 기준으로 산출

※ 재범율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당해 보호관찰기간 중 다른 범죄를 범하여 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소년 형사사건 처리 결과
소년범죄 처리결과 참조

6. '99. 9월 현재 소년원 등에 배정된 전체 의료비와 재소자 1인당 의료비, 의료비의 집행실태, 의료관계인원, 의료인 1인당 1일 평균 진료건수 · 1일 근무시간(추가)

□ 의료비 배정 및 집행실태

기 관	의 료 비			비 고
	총 액	1 인당	집 행 액	
12개 소년원, 5개 소년분류심사원	83,224천원	22,990원	66,510천원	'집행액은 '99.9.30 현재기준 임

□ 의료인 ('99. 9. 30 현재)

기 관	의 료 인			비 고
	의료인수	의사 1인당 1일 평균진료건수	1일 근무시간	
12개소년원, 5개소년분류심사원	36명 (의사19,간호사17)	12	9시간	

28. 2). 서울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 공문

==========

○ 대검찰청의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은 99. 9. 10. 폐지하여 현재는 공안사범 출소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 아니함을 말씀드립니다.

28. 1) 전국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공안사범 현황(구치소, 죄명, 입소일, 만기출소 예정일)

==========

○ 공안사범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상 나쁜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고, 개인의 인권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현황으로 대체 제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안사범 현황 ('99. 8. 31 현재)

계	기 결	미 결
14	7	7

※ 위 14명의 죄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임

- 형기별 현황(기결)

계	1년이내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무기
7			2	3		2

43. 교정협회 기구표 및 재직인원, 사업내역('99. 8. 31 현재)

==========

○ 교정협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4개부(기획, 총무, 영업, 공제사업), 2개 사업소(대구, 태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99. 8. 31 현재 재직인원은 이사장 1명, 이사 3명, 직원 29명 등 총 33명입니다

○ 사업내역은
-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 후생사업
- 교정공무원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 수용자 교정교화 사업의 지원
- 기타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입니다

9. 교정협회 기준과 운영근거 문서와 교정협회 수익금의 사용내역

==========

○ 재단법인 교정협회는 '79. 4. 11 재단법인 교정복지 장학재단으로 설립, '88. 3. 8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99. 9. 30현재 이사장 1, 이사 3, 직원 29명 등 총 33명의 임직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설립근거는 공익법인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입니다

○ 설립목적은 교정공무원의 복지, 후생사업, 순직 및 퇴직 유공 교정공무원의 기념, 원호사업, 교정공무원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재소자 교정교화업무의 지원사업, 기타 교정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교정행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입니다

○ 교정협회 수익금은 사업목적에 따라
-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 후생사업
- 순직 및 퇴직 유공 교정 공무원의 기념, 원호사업
- 교정공무원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 수용자 교정교화 사업의 지원
- 기타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제7조(찬양 고무 등), 제10조(불고지
위반에 대한 검찰 기소 현황(91년-99년 연도별 통계)

==========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 등 위반에 대한
검찰기소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국가보안법 제4조,제7조,제10조 위반에 검찰 기소 현황('91-'99)

국가보안법 제4조,제7조,제10조 위반에 검찰 기소 현황('91-'99)

구분 / 년도	국 가 보 안 법		
	제4조(목적수행) 등	제7조(찬양고무) 등	제10조(불고지) 등
91	0	280	0
92	26	244	3
93	3	75	0
94	8	329	0
95	10	188	2
96	10	428	0
97	13	554	0
98	4	409	0
99.9.20.현재	0	197	0
계	74	2,704	5

(단위 : 명)

※ 연도별 구속자 중 기소현황

54. 96년 1월 1일부터 '99년 8월 현재까지 노조활동 관련 사법조치 현황

(연도별, 수사건수대비 공소 및 공소유지결과)

==========

○ 96.1.1~99.8.31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총 476명이고, 검찰처분 및 1심 재판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 다만, 위 기간동안의 노조활동 관련 불구속자에 대한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노조활동관련 근로자 사법처리 현황 1부.

노조활동관련 근로자 사법처리 현황

▲ 구속 및 검찰처분 현황

연도	총구속	검찰처분				수사중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구약식	불기소	
'96	102	94	5		3	
'97	42	30	7		5	
'98	219	199	16	3	1	
'99	113	101	3	1		8
계	476	424	31	3	9	8

▲ 1심 재판 결과

연도	구공판	재판결과					재판계속중
		실형	집유	벌금	선유	기타	
'96	99	8	74	7	7		3
'97	37	2	28	5		2	
'98	215	17	166	13			19
99.1.1~8.31	104	6	53		3	1	41
계	455	33	321	25	10	3	63

구분 / 년도	사 건 명	구속 인원	구속일자	위법내용	처리결과					
					실 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재판중	수사중	무혐의
98	○ 밀입북 사건	12	4. 10. (1) 4. 22. (1) 4. 26. (1) 8. 7. (5) 8. 17. (1) 11. 3. (1) 12. 24. (2)	잠입·탈출 회합·통신	4	2	5	1		
〃	○ 전국농학계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사건	2	4. 28. (1) 5. 20. (1)	찬양고무		2				
〃	○ 인제대활동가조직 사건	6	5. 27. (6)	〃		6				
〃	○ 안양민주화청년연합 사건	9	6. 2. (9)	〃		9				
〃	○ 전국학생연대 사건	7	6. 9. (5) 6. 21. (1) 7. 23. (1)	〃		6		1		
〃	○ 진보민중청년연합 사건	6	6. 24. (6)	〃		6				
〃	○ 영남위원회(일명 동창회) 사건	15	7. 22. (15)	반국가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3			12		

국가보안법위반 처리 현황(구속)

(98. 2. 25.~99. 8. 31.)

구분 / 년도	사 건 명	구속 인원	구속일자	위법내용	처리결과					
					실 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재판중	수사중	무혐의
98	○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28	3. 10. (1) 4. 13. (2) 4. 19. (1) 5. 8. (17) 5. 17. (1) 10. 2. (2) 11. 14. (2) 12. 4. (2)	찬양고무	7	19		2		
〃	○ 북부노동자회 사건	9	3. 17. (1) 5. 12. (7) 6. 1. (1)	〃	1	7	1			

구분 / 년도	사 건 명	구속 인원	구속일자	위법내용	처리결과					
					실 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재판중	수사중	무혐의
98	○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사건	7	12. 4. (6) 12. 7. (1)	찬양고무				7		
〃	○ 기타, 한총련 사건	312		찬양고무 등	18	267(2)	10	14		1
〃	○ 소 계	441			34	331(2)	16	56	1	1
99	○ 전국학생연대 사건	1	2. 22. (1)	찬양고무				1		
〃	○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11	3. 30. (1) 4. 8. (1) 6. 5. (1) 6. 10. (3) 6. 11. (3) 7. 1. (1) 8. 6. (1)	〃		1		10		
〃	○ 밀입북 사건	1	4. 2. (1)	잠입·탈출 회합·통신		1				
〃	○ 서울진보청년회 사건	6	4. 15. (4) 4. 24. (2)	찬양고무				5	1	
〃	○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사건	1	5. 18. (1)	〃				1		

구분 / 년도	사 건 명	구속 인원	구속일자	위법내용	처리결과					
					실 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재판중	수사중	무혐의
98	○ 울산대 혁신대오 사건	4	7. 23. (4)	찬양고무				4		
〃	○ 전국노동운동협의회 사건	1	8. 10. (1)	〃		1				
〃	○ 범민련 남측본부 사건	6	8. 15. (6)	회합·통신 찬양고무				5	1	
〃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방북 사건	1	8. 27. (1)	잠입·탈출 찬양고무				1		
〃	○ 오스트리아거점 간첩 사건	2	9. 7. (2)	간첩 등	1	1				
〃	○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	2	9. 8. (1) 9. 17. (1)	회합·통신				2		
98	○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사건	2	9. 11. (2)	찬양고무		2				
〃	○ 기타 간첩 사건	1	10. 2. (1)	간첩 등				1		
98	○ 단국대신자주대오 사건	5	11. 4. (5)	찬양고무		2		3		
〃	○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사건	3	11. 5...(3)	〃				3		
〃	○ 인터넷,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개설 사건	1	11. 6. (1)	〃		1				

37. 공안, 시국사범과 관련하여(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 집시법, 국가보안법 등으로 체포된 공안사범의 현황
- 집시법,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들의 처리 내역(영장 기각율, 기소율, 석방율 등)
- 국가보안법위반사범 중 조항별 적용 현황
- 한총련 대의원 검거 현황
- 국가보안법위반 구속자 중 1심, 2심, 최종심 재판결과 현황
- 국가보안법 조직사건 적발내역 및 관련자 처리 현황

==========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가보안법위반사범, 집시법·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한 처리내역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국가보안법위반사범 현황
2. 집시법위반사범 현황
3. 국가보안법위반사범 처리내역(영장기각율 등)
4. 집시법위반사범 처리내역(영장기각율 등)
5. 국가보안법위반사범 조항별 적용 현황
6. 한총련 대의원 검거 현황
7. 국가보안법위반사범 심급별 재판결과
8. 국가보안법위반 조직사건 처리현황

구분 / 년도	사 건 명	구속 인원	구속일자	위법내용	처리결과					
					실 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재판중	수사중	무혐의
99	○ 북한찬양 유인물 배포 사건	1	5. 20. (1)	찬양고무				1		
〃	○ PC통신 이용 북한 조평통과 통신 사건	1	5. 22. (1)	회합·통신 찬양고무				1		
〃	○ 조업선원 월북 기도 사건	2	5. 26. (2)	잠입·탈출				2		
〃	○ 반미구국한양 활동가 조직 사건	7	6. 9. (5) 7. 1. (2)	찬양고무				7		
〃	○ 민족대토론회 참석 사건	4	8. 11. (4)	회합·통신 찬양고무					4	
〃	○ 범민족대회 참석 사건	2	8. 18. (1) 8. 19. (1)	〃					2	
〃	○ 민족민주혁명당 관련 간첩 사건	4	8. 20. (2) 8. 23. (2)	간첩 등					4	
〃	○ 기타, 한총련 사건	183		찬양고무 등		39	5	121	18	
〃	○ 소 계	224				41	5	149	29	
총 계	98. 2. 25.~99. 8. 31.	665			34	372(2)	21	205	30	1

<붙임 1>

국가보안법위반사범 현황

구분 / 연도	계	구 속	불구속
98	776	465	311
99 (1~9)	396	255	141

<붙임 2>

집시법위반사범 현황

구분 / 연도	접 수	구 속	불구속
98	1,579	111	1,468
99 (1~9)	1,465	35	1,430

<붙임 3>

국가보안법위반사범 처리내역(영장기각률, 기소율, 석방률)

구분 / 연도		98	99(1~9)
체포인원		482	270
영장기각		17	15
영장기각율		3.5%	5.6%
구속인원		465	255
기소인원		447	201
기 소 율		92.7%	74.4%
석방률	보 석	35	11
	집행유예	378	113
	구속취소	20	13
	선고유예	3	1
	기 타	3	3
	계	439(94.4%)	141(55.3%)

※ ( )는 비율임

※ 영장기각률·기소율은 체포인원에 대한 비율
석방률은 구속인원에 대한 비율

<붙임 4>

집시법위반사범 처리내역(영장기각률, 기소율, 석방률)

구분 \ 연도		98	99(1~9)	계
체포인원		133	45	178
영장기각		22	10	32
영장기각률		16.5%	22.2%	17.9%
구속인원		111	35	146
기소인원		106	32	138
기 소 율		79.6%	71.1%	77.5%
석방률	구속취소	6	7	13
	집행유예	83	12	95
	보 석	6	9	15
	선고유예			
	기 타	6	1	7
	계	101(90.9%)	29(82.8%)	130(89.0%)

※ ( )는 비율임

※ 영장기각률·기소율은 체포인원에 대한 비율
석방률은 구속인원에 대한 비율

<붙임5>

국가보안법위반사범 조항별 적용현황(구속)

구분 \ 연도	98	99 (1~9)
목적수행등	4	5
이적단체 구성·가입	335	215
이적표현물	91	16
회합통신등	21	7
잠입탈출등	11	10
편의제공등	2	2
기 타	1	
계	465	255

<붙임 6>

98.1-99.9 한총련 대의원 검거 현황

기 수	대상자	사 법 처 리				미검거
		검 거	구 속	불구속	내사종결	
5 기	44	22	16	3	3	22
6 기	301	269	145	118	6	32
7 기	291	171	106	49	16	120
계	636	462	267	170	25	174

<붙임 7>

국가보안법위반사범 심급별 재판결과(구속)

구분 / 연도	구 공 판	재 판 결 과												재판중
		1심				2심				3심				
		실 형	집행 유예	선고 유예	무 죄	실 형	집행 유예	선고 유예	무 죄	실 형	집행 유예	선고 유예	무 죄	재판중
98년	447	7	248	2		18	85	1		10	18	2		56
99 (1-9)	217		61				4							152

(단위 : 명)

※ 재판결과는 심급별 확정기준임

<붙임 8>

국가보안법 위반 조직 사건 및 관련자 처리 현황

구분 / 연도	국가보안법위반 조직 사건명	처리현황	
		구 속	불구속
98년도	○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 사건	8	
	○ 국제사회주의자들(IS) 그룹	29	1
	○ 전국농학계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농대협)사건	3	
	○ 북부노동자회(북노회) 사건	8	
	○ 안양민주화청년연합(안민청) 사건	9	3
	○ 전국학생연대사건	6	4
	○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민청 사건)	6	
	○ 영남위원회(일명 동창회) 사건	15	2
	○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노진추)사건	2	
	○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사건	3	6
	○ 민족사랑 청년노동자회(민청)사건	7	2
	○ 한총련을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한사모)사건	3	1
	○ 조선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사건	3	
	○ 인제대 활동가 조직사건	6	
	○ 울산대 혁신대오 사건	4	
	○ 단국대 신자주대오 사건	5	
	○ 오스트리아 거점 간첩 사건	2	